
The Beauty of HOLINESS

A SPIRIT-FILLED LIFE. A HOLY CALLING.

글로벌 감리교회 2026년 총회
9월 1일 화요일
—
일일 저널

오전 예배 · 본회의 · 입법 위원회 · 선교 체험
Sandton Convention Centre, Johannesburg

목차

오늘의 일정	2
변경 및 정정 사항	3
심사를 위한 청원	5

오늘의 일정

오전 6:30 – 오전 7:00	GC26 셔틀 오프사이트 숙소
오전 6:45 – 오전 9:30	GC26 셔틀 호텔
오전 7:00 – 오전 8:00	도착 후 휴식
오전 7:00 – 오후 6:00	전시회 개장
오전 7:30	목회자 및 지도자 훈련(선교 체험)행 셔틀 픽업 — SCC Street Entrance
오전 7:45	봉헌 기도
오전 7:45	예배장 입장 시작
오전 8:15 – 오전 9:20	예배 - 거룩함이 깨닫게 하고 변화시킨다 (Diane Ury 목사, 박사) - 이사야 6:1-8
오전 9:00 – 오후 1:00	목회자 및 지도자 훈련(선교 체험) — Soweto
오전 9:20 – 오전 9:30	전환
오전 9:30 – 오전 10:30	입법 위원회
오전 10:30 – 오전 11:00	휴식
오전 11:00 – 오후 12:30	본회의 - 의사일정 위원회 보고 - 연대 협의회 보고 – Jessica LaGrone - 현 위원단 존속 여부에 대한 표결 (¶ 802.2)
오전 11:30	건강 검진(선교 체험)행 셔틀
오전 11:30	어린이 성경 캠프(선교 체험)행 셔틀
오전 11:30	기독교 제자도 토론(선교 체험)행 셔틀
오후 12:30 – 오후 2:00	GC26 셔틀 호텔
오후 12:30 – 오후 1:45	식사 플랜 신청자를 위한 현장 점심 제공
오후 1:00	목회자 및 지도자 훈련에서 돌아오는 셔틀
오후 1:00 – 오후 4:00	건강 검진(선교 체험)
오후 1:00 – 오후 5:00	어린이 성경 캠프(선교 체험)
오후 1:00 – 오후 5:00	기독교 제자도 토론(선교 체험)
오후 1:15	봉헌 기도
오후 1:45 – 오후 3:15	입법 위원회
오후 3:15 – 오후 3:45	휴식
오후 3:45 – 오후 6:00	입법 위원회
오후 4:30	건강 검진 복귀 셔틀
오후 5:00	어린이 성경 캠프 복귀 셔틀
오후 5:00	기독교 제자도 토론 복귀 셔틀
오후 6:00 – 오후 10:00	GC26 셔틀 호텔
오후 6:00	위원회 결의 사항 제출 마감
오후 6:00 – 오후 7:30	저녁 식사는 개인 부담
오후 7:00	봉헌 기도
오후 7:30 – 오후 9:30	입법 위원회 (필요시)
오후 7:30 – 오후 9:30	짐바브웨 성가대와 함께하는 예배 리허설
오후 8:00	GC26 셔틀 오프사이트 숙소
오후 9:15 – 오후 10:00	GC26 셔틀 호텔
오후 10:00	위원회 결의 사항 제출 마감

변경 및 정정 사항

공천 변경

제출 오류로 인해 다음 후보자들은 위원단 및 위원회 공천 후보자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귀하의 후보자 리스트에 추가해 주십시오.

- 연회 위원단 – 목회자 회원 – Keihwan Kevin Ryoo
- 연대 협의회 – 평신도 회원 – Eugene Paik
- 상소협의회 – 목회자 회원 – Sungwon Nam, Yon Taek Bae
- 제자도, 교리 및 정의로운 사역 위원단 – 목회자 회원 – Theddius J Kim, David Ryu (Sung-Soo); 평신도 회원 – Jonathan S. Jeon
-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단 – 평신도 회원 – Kiho D Sohn
- 재정, 행정, 연금 및 복지 위원단 – 평신도 회원 – Sung-Soo Kim
- 총회 위원단 – 목회자 회원 – Ilyoung William Kim, David Ryu (Sung-Soo), Yon Taek Bae
- 글로벌 주교직 위원회 – 목회자 회원 – Ilyoung William Kim, Theddius J Kim; 평신도 회원 – Kiho D Sohn
- 하나님 나라 확장 위원단 – 평신도 회원 – Yoonhee Kang
- 사역 및 고등교육 위원단 – 목회자 회원 – Sungwon Nam; 평신도 회원 – Jonathan S. Jeon

하나님 나라 확장

- Greg West*, 목회자 후보자는 현재 위원단 회원입니다.

청원 회부

- 청원 1105(518쪽)는 헌법, 연대 조직 및 재정 입법 위원회에서 사역 입법 위원회로 회부됩니다.
- 청원 1106(522쪽)는 헌법, 연대 조직 및 재정 입법 위원회에서 사역 입법 위원회로 회부됩니다.
- 청원 1107(524쪽)는 헌법, 연대 조직 및 재정 입법 위원회에서 사역 입법 위원회로 회부됩니다.
- 청원 1115(464쪽)는 헌법, 연대 조직 및 재정 입법 위원회에서 사법 행정 입법 위원회로 회부됩니다.
- 청원 1129(519쪽)는 헌법, 연대 조직 및 재정 입법 위원회에서 사역 입법 위원회로 회부됩니다.
- 청원 1245(429쪽)는 헌법, 연대 조직 및 재정 입법 위원회에서 연회 입법 위원회로 회부됩니다.
- 청원 1266(523쪽)는 헌법, 연대 조직 및 재정 입법 위원회에서 사역 입법 위원회로 회부됩니다.

대표단 변경

Virginia

- 평신도 대의원 대리 Michael Thomas Huff를 철회하고, 평신도 예비 대의원 Eric Roy Shuey를 새 평신도 대의원 대리로 추가합니다.

감독 후보자

- Baziel Yoila Yayuba가 감독 선거 후보에서 사퇴하였습니다. “이는 글로벌 감리교회에 대한 저의 지지를 철회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와 그 지도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사명에 여전히 온전히 헌신하고 있습니다.”

기도 정정

- 병원으로 이송된 사람은 Gabriella Kopas가 아니라 Aldersgate Europe 신생 지역 대표 Adwoa Brewu입니다. Adwoa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어제의 데일리 저널 정정

- 어제의 데일리 저널에는 네팔 홍수 피해를 입은 회중들이 글로벌 감리교회 소속이라고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이들은 글로벌 감리교회 소속이 아닙니다. 이 교회들은 실제로 존재하며 계속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지만, 글로벌 감리교회 소속 회중은 아닙니다.

심사를 위한 청원 정정

- 어제의 데일리 저널에는 사법 행정 입법 위원회의 청원 세 건이 지지된 것으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세 건 중 어느 것도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각 건에 대해 인쇄된 처분은 아래와 같이 정정되며, 그와 함께 표결 총계 한 건도 정정됩니다.
- 일괄동의안 JUD-1A는 어제 판에 애초에 게재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청원 1114와 1327만 여기에 포함되었으며, 두 청원 모두 JUD-1B에 속합니다.

청원 1114 — 미해결 고소에 대한 추가적 유연성(보고서 570쪽)

- 일괄동의안 JUD-1A에 ‘원안대로 지지됨’으로 인쇄되었습니다. 정정: 일괄동의안 JUD-1B에서 ‘대안을 지지하기 위해 기각됨’ — 청원 기각. 표결: 찬성 25 / 반대 1 / 기권 0.

청원 1327 — 온전한 성경적 책무성(보고서 571쪽)

- 일괄동의안 JUD-1A에 ‘원안대로 지지됨’으로 인쇄되었으며, 표결은 찬성 29 / 반대 1 / 기권 1이었습니다. 정정: 일괄동의안 JUD-1B에서 ‘원안대로 승인되지 않음’ — 청원 기각, 표결 찬성 29 / 반대 1 / 기권 0.

청원 1045 — 교리와 장정의 905항을 수정하는 청원(보고서 572쪽)

- ‘원안대로 지지됨’으로 인쇄되었습니다. 정정: ‘원안대로 승인되지 않음’. 배치는 적절했습니다. 찬성 21 / 반대 8 / 기권 0으로는 일괄동의의 기준에 미달하므로 별도 안건으로 적절히 심의되었습니다.

입법 위원회 임원 추가

사회적 증언 입법 위원회 임원

소위원회 A

- Daniel Buck, 의장(Great Lakes)
- David Spivey, 서기(North Carolina)

소위원회 B

- Mandy White, 의장(West Plains)
- Becky Heeren, 서기(Upper Midwest)

심의 대상 청원

위원회 조치

2026년 8월 30일 주일 - 2026년 8월 31일 월요일

2일차 일정표. 일괄동의안 식별자에서 숫자는 회의 일자를, 문자는 그 처리 결과를 나타내며, A는 지지, B는 반대를 의미합니다. 청원은 본회의에서 일괄동의안에서 제외하도록 동의가 제기될 수 있으며, 그 경우 해당 청원은 단독으로 처리되어 기록됩니다. 주일에 이루어져 월요일 판에 신고된 위원회 조치는 여기에서 반복하지 않습니다.

교리와 성례전 | 완료된 청원

일괄동의안 DS-2A — 지지된 청원

청원 1077 27쪽 웨슬리 저작에 대한 포용적 해석 명확화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45 / 반대 3 / 기권 2

개정:

근거 변경:

각주: 허용됩니다

청원 1140 39쪽 고백 교인 단락 간소화

원안으로 지지: 찬성 58 / 반대 0 / 기권 0

청원 1300 36쪽 집사목사에게 성례 집례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명확화

원안으로 지지: 찬성 51 / 반대 1 / 기권 0

청원 1331 45쪽 포도즙을 요구하지 않고 포도주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권한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50 / 반대 1 / 기권 1

개정:

변경된 조항:

교회는 지역 교회의 관례와 분별력에 따라 성찬식 거행 시 포도주 또는 포도즙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중은 지역 교회의 관행과 분별력에 따라 성찬식 거행에서 포도주 또는 포도즙 중 하나를 제공하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알코올 관련 우려로 인해 포도주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의 경우, 목회적 지도 하에 포도즙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청원 1406 43쪽 글로벌 일치, 지역 유연성: 신실한 교인 자격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36 / 반대 3 / 기권 12

개정:

변경된 조항:

지역 교회의 신실한 멤버십은 경건의 행위와 자비의 행위를 포함하는 은혜의 수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우리를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어 거룩함 가운데 자라가며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지역 교회의 신실한 멤버십은 경건의 행위와 자비의 행위를 포함하는 은혜의 수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우리를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어 거룩함 가운데 자라가며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청원 1428 37쪽 세례 서약에 거룩함 가운데 성장 추가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52 / 반대 0 / 기권 0

개정:

변경된 조항:

성결 안에서 성장하며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추구할 것을 서약합니까? 전적 성화?

귀하는 거룩함과 전적 성화를 받으며 이를 추구하는 데 자신을 헌신하겠습니까?

청원 1430 42쪽 회원 서약에 거룩함 가운데 성장 추가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55 / 반대 0 / 기권 0

개정:

변경된 조항:

성결함으로 성장하며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귀하는 거룩함과 전적 성화를 받으며 이를 추구하는 데 자신을 헌신하겠습니까?

귀하는 [이름] 글로벌 감리교회(또는 [이름], 글로벌 감리교회 지역 교회)의 신실한 교인이 되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대표자 **제자**로서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임재,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봉사, 그리고 여러분의 증거를 통하여 그 사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모든 능력을 다하겠습니까?

일괄동의안 DS-2B — 반대된 청원

청원 1011 34쪽 성례 집례 권한에 관한 청원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51 / 반대 0 / 기권 0

청원 1056 5쪽 성령의 모든 능력과 은사를 구함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51 / 반대 0 / 기권 2

청원 1061 Page 33 “글로벌 감리교회 교리문답”을 “PART ONE: DOCTRINE”에 추가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50 / 반대 3 / 기권 0

청원 1062 35쪽 훈련받은 평신도에게 성례 집례 권한 확대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48 / 반대 2 / 기권 0

청원 1315 41쪽 제자 삼기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52 / 반대 0 / 기권 6

청원 1403 9쪽 글로벌 일치, 지역 유연성: 단지 열망에 그치지 않음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51 / 반대 0 / 기권 2

청원 1404 10쪽 글로벌 일치, 지역 유연성: 지역 교회를 위하여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51 / 반대 0 / 기권 2

청원 1405 40쪽 글로벌 일치, 지역 유연성: 교인 자격에 대한 기대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55 / 반대 0 / 기권 0

청원 1461 8쪽 새 창조의 백성으로서의 예배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51 / 반대 0 / 기권 2

개별 심의 — 일괄동의안에 포함되지 않음

청원 1013 44쪽 성찬식의 의미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51 / 반대 1 / 기권 2

개정:

변경된 조항:

문단 421. 성찬의 의미. 성찬식(주의 만찬 및 유카리스트라고도 불림)이라는 성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참여적 교제(헬라어 koinonia: 1 Cor 10:16-17)로 초대받습니다. 예수님은 성찬의 떡과 잔 안에서 뿐만 아니라 그분의 거룩한 교회로서의 성찬 참여자들과도 능동적이고 성례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더욱이,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께서는 성찬 참여자들을 권면하시고 용서하시며 치유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능력 주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시키시며 많은 영적 열매와 은사를 부여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례를 계속해서 받을 때, 그것은 우리의 평생에 걸친 그리스도인의 순례 여정을 지탱해 주는 양식이 됩니다.

성찬은 통상적으로 함께 모인 회중, 즉 살아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인 교회 안에서, 살아 계신 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이 기억은 단순한 심리적·역사적 회상, 곧 과거의 한 사건을 마음속에 떠올리는 것(헬라어 mimnēskomai) 이상입니다. 성찬은 신적·카이로스적 기억, 곧 그리스도의 실제 임재를 살아 있는 표적으로 불러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헬라어 아나므네시스). 따라서 성례는 교회와

교회의 주님 사이에 일어나는 개인적이고 초자연적인 만남입니다. 성찬 안에서 그리고 성찬을 통하여, 성찬에 참여하는 이들은 그분의 상의 주인으로 임재하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만나게 됩니다(만나게 됩니다)(1 Cor 11:23-26).

신성한 예배에서 웨슬리안 제단예로의 초청으로 행해지는 성찬은 말씀 선포 후에 이어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즉 말씀과 성찬은 개체 감리 교회의 주된 예배에서 실제로 함께 시행되어야 합니다. 웨슬리안 감리교의 요구에 따라 목사와 개체교회 회중은 사람들이 최소한 주간 말씀과 성찬 모임에서 거룩한 성례를 지속적으로 받고 살아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항상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존 웨슬리의 설교 101번 “끊임없는 성찬의 의무”를 참조하십시오.) 말씀과 성례를 지속적으로 함께 사용하는 것은 거룩함과 제자도의 성장에 있어 최고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각 개체 교회는 가능한 자주 이를 실천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주간 예배에 신체적으로 참석할 수 없었던 이들에게 적법하게 축성된 성만찬의 요소들을 가지고 가는 것은 신중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또한 건강상의 이유를 고려하여, 무알코올 주스와 글루텐 프리 빵을 대안으로 제공하는 것 역시 신중하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성찬식의 의미와 방식. 세례와 마찬가지로 성찬식 성례는 물리적 요소를 통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으로서, 회개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모든 이가 그분 안에서 새 생명을 받는다는 복음의 약속을 제공합니다. 주의 만찬 또는 유카리스트(“감사”를 뜻하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로도 알려진 성찬식에서 우리는 성례 전체 안에 효력 있게 실제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적 현존과의 교제(koinonia)로 초대받습니다.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와 함께 성도들의 친교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잔치, 곧 어린양의 혼인 잔치의 미리 맛볼을 받습니다. 이 성례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성찬식은 일반적으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크신 구원 행위를 기억하고 응답하기 위하여 육체적으로 모인 회중 가운데서 거행됩니다. 지역 회중은 회중이 말씀과 성찬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기회를 보장할 것을 권고받습니다. 존 웨슬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가능한 한 자주 주의 만찬을 받는 것이 의무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²⁰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를 명하셨고 우리는 이를 통하여 큰 유익을 받기 때문이며, 우리는 “우리 영혼의 양식”을 받습니다. 웨슬리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만찬을 주신 것은 “이 수단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사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복들을 얻게 하시며, 우리가 땅에서는 거룩함을 얻고 하늘에서는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²²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가능한 한 자주 성찬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찬식은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께서 하신 행위를 상기시킵니다. 곧 그분께서 떡과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식 전례는 다음을 포함하여 이러한 행위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 떡과 잔을 취함/준비함; • 죄에 대한 회개와 죄의 고백의 시간(죄에 대한 사면 선포를 포함함); • 곧 받게 될 선물에 대한 감사; • 최후의 만찬에서 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기관의 말; • 성령을 초청하여 떡과 포도주의 선물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어 우리가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시도록 드리는 알림/아름/호출의 기도; • 떡을 떼고, 그리고 •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요소를 배포함. 어떤 이유로든 유카리스트 요소를 받을 수 없거나(또는 받지 않기로 선택하는) 사람들도, 축복을 받기 위하여 앞으로 나오도록 여전히 권고받습니다. 성찬식의 요소는 상태로 인해 육체적으로 참석할 수 없는 이들에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에 무알코올 포도주나 주스를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포도주를 사용하는 경우 포도주 외에 무알코올 주스도 준비해서 제공해야 한다.

청원 1443 28쪽 웨슬리 설교와 주석에 대한 이해 명확화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56 / 반대 0 / 기권 0

개정:

변경된 조항:

¶ 107. 기독교 제자도를 위한 웨슬리의 기본 표준. 기독교 신앙에 대한 감리교의 표현의 규범적 기여와 강조를 대표하는 웨슬리 표준은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이끄는 18세기 복음주의 부흥운동의 영적 후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공유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기준들은 우리에게 감리교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며, 우리 공동체의 가르침은 그 주요 교리적 주제, 신학적 가르침, 그리고 경건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 기준들은 감리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치며, 우리 공동체의 가르침은 이 기준들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 웨슬리안 기준들은 우리 교회 전반에 걸쳐 신학적 기초를 위한 중요한 문서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것들은 우리 목회자들과 다른 교사들의 믿음과 사역을 형성해야 하며, 모든 글로벌 감리교인들은 성경과 신학에 대한 이해를 돕는 자료로서 그것들을 참고하도록 권장됩니다. 다루는 주제의 폭이 매우 넓고, 존 웨슬리가 본질적이지 않은 사안들에 관하여 개인적 견해를 간략히 표현한 바에 비추어, 글로벌 감리교회는 우리가 이 웨슬리안 기준들에 접근함에 있어 역사적 또는 웨슬리안 기독교 믿음의 “뿌리를 치지” 아니하고, 이 문서들의 핵심 신학적 가르침과 주제에 모순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다른 교리 기준들과 일치하는 한, 앞 단락들의 교리적 기준들에 요구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의 일치를 이 특정 웨슬리안 기준들에 포함된 모든 진술에 대하여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 웨슬리안 기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일괄동의안 LC-2A — 지지된 청원

청원 1031 98쪽 멤버십 명확화

원안으로 지지: 찬성 50 / 반대 0 / 기권 0

청원 1032 133쪽 부정확한 참조 삭제

원안으로 지지: 찬성 51 / 반대 0 / 기권 0

청원 1098 96쪽 세례교인 정의 명확화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49 / 반대 0 / 기권 0

개정:

변경된 조항:

지역 교회의 세례교인에는 지역 회중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또는 그리고 그 기독교 세례를 받은 모든 세례 받은 사람과, 이후에 기독교 세례를 어떤 다른 다른 회중에서 받은 후 지역 교회로 멤버십이 이전된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지역 교회의 세례교인에는 지역 회중에서 기독교 세례를 받은 모든 세례 받은 사람과, 이전에 다른 회중에서 기독교 세례를 받은 후 지역 교회로 받아들여진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청원 1139 97쪽 고백 교인 정의 명확화

원안으로 지지: 찬성 50 / 반대 0 / 기권 0

청원 1142 108쪽 멤버십 이전 절차 명확화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51 / 반대 0 / 기권 0

개정:

변경된 조항:

¶ 423. 다른 교단에서 이적. 양호한 상태에 있는 어떤 기독교 화폐 단위의 회원이 ¶ 415에 정의된 대로 성세를 받고 글로벌 감리교회와 연합하기를 원할 경우, 세례교인 또는 고백 교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개인은 그 개인의 이전 교회로부터의 이전 통지 또는 그 밖의 만족할 만한 증거에 의하여 거룩한 세례를 받았음을 입증함으로써 세례교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개인은 세례교인에 관하여 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회원 서약(¶ 411, 418, 419 참조)을 한 후 고백 교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목사/목회자는 모든 전송된 회원의 접수를 해당 회원의 이전 교회에 신고합니다. 이전으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에 대하여, 목사/목회자는 이전 교회에 접수 일자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글로벌 감리 교회의 믿음, 일, 정치에 관한 교육을 제공할 것을 권고합니다.

청원 1158 130쪽 교회 위원회의 멤버십 명확화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51 / 반대 0 / 기권 0

개정:

변경된 조항:

2. 지역 교회의 모든 이사회, 협의회, 위원단, 위원회 및 태스크 포스의 회원은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도덕적으로 훈련되며, 교회 생활에서 포용성의 요구에 헌신하고, 글로벌 감리교회의 윤리적 기준에 충실하며, 그 사무를 관리할 능력을 갖춘 진정한 그리스도인 품성을 지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투표권이 있는 모든 자는 자신이 섬기는 지역 교회의 멤버십 롤에 등재된 글로벌 감리교회의 고백 교인이자 현직 회원이어야 합니다. 담임牧사는 지역 교회의 행정 책임자이며, 교리와 장정에 달리 제한되지 않는 한 모든 회의, 이사회, 협의회, 위원단, 위원회 및 태스크 포스의 투표권 있는 당연직 회원이 됩니다. 담임牧사는 교회에 파송된 다른 목사를 지정하여 이사회, 협의회, 위원단, 위원회 또는 태스크 포스의 당연직 회원으로서 자신을 대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2. 지역 교회의 모든 공식 행정 기구 이사회, 협의회, 위원단, 위원회 및 태스크 포스의 회원은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도덕적으로 규율이 있으며, 교회 생활에서 포용성의 위임 사항에 헌신하고, 글로벌 감리교회의 윤리적 기준에 충실하며, 그 사무를 관리할 역량이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지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투표권을 가진 모든 평신도는 섬기는 지역 교회의 활동 멤버십 명부에 등재된 글로벌 감리교회의 고백 교인이어야 합니다. 담임牧사는 지역 교회의 행정 책임자이며, 따라서 교리와 장정에 의하여 달리 제한되지 않는 한, 그 모든 공식 행정 기구 회의, 이사회, 협의회, 위원단, 위원회 및 태스크 포스의 투표권 있는 당연직 회원이 됩니다. 담임牧사는 또한 교회에 파송된 다른 목사/목회자를 지정하여 공식 행정 기구 이사회, 협의회, 위원단, 위원회 또는 태스크 포스 중 어느 것의 당연직 회원으로서 자신을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청원 1159 132쪽 모든 교회 위원회의 정족수 정의

원안으로 지지: 찬성 51 / 반대 0 / 기권 0

청원 1161 135쪽 구역회를 소집할 수 있는 목사/목회자 범위 명확화

원안으로 지지: 찬성 51 / 반대 0 / 기권 0

청원 1162 137쪽 전자 구역회를 허용하는 새 조항

원안으로 지지: 찬성 51 / 반대 0 / 기권 0

청원 1163 138쪽 지역 구역회 소집 권한 명확화

원안으로 지지: 찬성 51 / 반대 0 / 기권 0

청원 1169 164쪽 교회 협의회 역할 명확화

원안으로 지지: 찬성 51 / 반대 0 / 기권 0

청원 1170 166쪽 교회 협의회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자 명확화

원안으로 지지: 찬성 51 / 반대 0 / 기권 0

청원 1173 172쪽 공천 및 지도력 개발 위원회의 멤버십과 목적 명확화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47 / 반대 0 / 기권 0

개정:

변경된 조항:

1. 공천 및 지도력 개발 위원회는 교회 협의회가 회중의 지도력(목사/목회자 및 고용된 직원을 제외한)에 관한 사항을 인도하도록 연중 내내 봉사하며, 봉사의 맥락으로서 선교와 사역에 초점을 맞추고, 영적 지도자의 개발과 훈련을 인도하고, 영적 지도자를 모집·양육·지원하며, 교회 협의회가 변화하는 지도력 필요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 공천 및 지도력 개발 위원회는 봉사의 맥락으로서 선교와 사역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회중의 평신도 지도력 (목사/목회자 및 고용된 직원은 제외)에 관한 사안에서 교회 협의회를 연중 지도하는 역할을 하며, 영적 지도자들의 개발과 훈련을 지도하고, 영적 지도자들을 모집·양육·지원하며, 변화하는 지도력 필요를 평가하는 데 교회 협의회를 보조합니다.

4. 경험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멤버십을 세 조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 한 조는 매년 3년 임기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는 이 위원회의 3년 임기가 면제된다. 임기를 마친 위원은 위원직을 승계할 수 없다. 위원회에는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직계 가족 중 한 명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평신도 지도자는 위의 가족 관계로 제한을 받는 경우 위원회의 회원으로 봉사할 수 없습니다. 연중 결원이 발생하면 교회 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4. 구역회는 위원회의 규모, 멤버십 및 봉사 기간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경험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멤버십을 세 조로 나눌 수 있으며, 그 중 한 조는 매년 3년 임기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는 이 위원회의 3년 임기가 면제된다. 임기를 마친 위원은 위원직을 승계할 수 없다. 위원회에는 같은 가구에 거주하는 직계 가족 중 한 명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평신도 지도자는 위의 가족 관계로 제한을 받는 경우 위원회의 회원으로 봉사할 수 없습니다. 연중 결원이 발생하면 교회 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한다.

5. 신원 확인 및 선정 과정에서, 사역의 지도력이 포용성과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5. 신원 확인 및 선정 과정에서, 사역의 지도력이 포용성과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지도자를 추천함에 있어, 위원회는 회중의 다양성, 회원들의 영적 은사, 그리고 그 선교와 사역을 위해 필요한 지도력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청원 1207 149쪽 구역회가 연대 기금을 설명할 의무 명확화

원안으로 지지: 찬성 51 / 반대 0 / 기권 0

청원 1302 129쪽 본 사안에서의 안전 보장

원안으로 지지: 찬성 50 / 반대 0 / 기권 0

청원 1398 106쪽 글로벌 일치, 지역 명확성: 비활성 멤버십 조항 간소화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47 / 반대 0 / 기권 1

개정:

변경된 조항:

비활성 명부에 등재된 회원은 활동 회원으로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는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활성 명부에 있는 회원은 지도력과 투표에서 제한됩니다. 구역회는 목사의 추천에 따라 삼분의 이 찬성으로 비활성 회원을

제명할 수 있습니다.

청원 1399 105쪽 글로벌 일치, 지역 명확성: 회원 책임성과 회복 명확화

원안으로 지지: 찬성 46 / 반대 0 / 기권 0

청원 1400 104쪽 글로벌 일치, 지역 유연성: 목회적 제자도 책임 간소화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45 / 반대 0 / 기권 1

개정:

변경된 조항:

목회자는 제자도를 통해 교인들이 돌봄을 받고 사역을 위해 준비되도록 해야 합니다.

목사/목회자는 회원들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도록 돕는 의도적인 제자도 과정을 통하여, 회원들이 돌봄을 받고 사역을 위해 갖추어지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청원 1401 103쪽 글로벌 일치, 지역 명확성: 회원 참여 기대 간소화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51 / 반대 0 / 기권 0

개정:

변경된 조항:

각 회원은 교회의 생활과 사역에 신실하게 참여함으로써, 세례와 멤버십의 서약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각 회중은 그 회원들에 대한 명확한 기대를 설정하고 이를 전달하여야 합니다.

일괄동의안 LC-2B — 반대된 청원

청원 1160 134쪽 집사 직무 사역자와 은퇴 목회자를 구역회 멤버십에서 제외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51 / 반대 0 / 기권 0

청원 1171 170쪽 주택 및 복지제도 검토 명확화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51 / 반대 0 / 기권 0

청원 1366 173쪽 글로벌 일치, 지역 명확성: 리더십 개발 구조 간소화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48 / 반대 0 / 기권 0

청원 1367 171쪽 글로벌 일치, 지역 유연성: 협의회 멤버십 및 정족수 간소화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46 / 반대 0 / 기권 0

청원 1368 169쪽 글로벌 일치, 지역 명확성: 교회 협의회 책임 간소화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45 / 반대 0 / 기권 0

청원 1369 167쪽 글로벌 일치, 지역 유연성: 교회 협의회 회의 간소화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51 / 반대 0 / 기권 0

청원 1382 131쪽 글로벌 일치, 지역 명확성: 교회 지도력 자격 명확화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51 / 반대 0 / 기권 0

청원 1396 109쪽 글로벌 일치, 지역 명확성: 다른 교단으로부터의 접수 간소화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50 / 반대 0 / 기권 0

청원 1397 107쪽 글로벌 일치, 지역 유연성: 연례 멤버십 갱신 요건 삭제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49 / 반대 0 / 기권 0

청원 1410 99쪽 연약적 연대: 평신도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50 / 반대 0 / 기권 0

청원 1411 136쪽 구역회 권한 및 교회 전체 투표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51 / 반대 0 / 기권 0

개별 심의 — 일괄동의안에 포함되지 않음

청원 1370 165쪽 글로벌 일치, 지역 유연성: 프로그램적 사역 설명 삭제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33 / 반대 16 / 기권 0

일괄동의안 MIN-2A — 지지된 청원

청원 1126 283쪽 목회자 훈련 기금-수정된 형식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52 / 반대 0 / 기권 0

개정:

변경된 조항:

¶ 511. 목회자 훈련 기금. 글로벌 감리교회 연대 협의회는 목회자 교육을 위한 기금을 유지해야 합니다. 재정·행정·연금 및 복지 위원단은 매년 기금을 평가하고, 배포 가능 총액을 권고합니다. 기금은 목회 및 고등교육 위원단에서 정한 정책에 따라 연회에 배분됩니다. 안수를 위한 교육 요구 사항을 이수 중인 인준받은 후보자 또는 목회자는 교육비 지원을 위해 소속 연회 안수 위원회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분산된 모든 기금은 대출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청원 1128 242쪽 안수받은 자의 성품과 역량.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58 / 반대 2 / 기권 0

개정:

변경된 조항:

¶ 505. 안수받은 이들의 인격과 역량. 안수 예정자는 웨슬리의 1756년 목회자에게 보낸 말씀의 정신에 따라, 안수 전에 뚜렷한 영적 형성과 역량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수받은 목회자는 존 웨슬리의 1756년 『목회자에게 보낸 말씀』과 동일한 정신으로 다음 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뚜렷한 형성과 역량을 입증해야 합니다. 모든 교육(¶ 507)은 아래 형성적 역량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웨슬리안 속회와 밴드, 또는 유사한 교제 모임을 통한 연약적 삶에 대한 헌신.

책임감 체계 안에서의 정서적 성숙도

모든 관계에서의 정직성, 곧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기독교 결혼에서의 신실함 또는 독신에서의 독신 생활을 포함합니다.

돈, 칭찬, 야망, 관능, 그리고 오락에 대한 사랑으로부터의 자유

부, 칭찬, 야망, 관능, 그리고 오락에 대한 사랑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악과 그 모양에서의 철저한 절제

제자 삼기 증식을 본으로 보이고 갖추게 함

정통 신앙을 수호할 수 있는 능력

평신도를 장려하고 미래의 목회자를 세우는 능력을 입증함

정통 신앙을 수호할 수 있는 능력

웨슬리안 영성훈련에 대한 헌신

평신도를 장려하고 미래의 목회자를 세우는 능력을 입증함

청원 1408 275쪽 장로목사 안수에 관한 역사적 질문 복원

원안으로 지지: 찬성 51 / 반대 0 / 기권 0

청원 1449 227쪽 교단이 인정하는 사역의 직분에 선교사를 포함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50 / 반대 0 / 기권 0

개정:

변경된 조항:

2. 장로 목사에게만 주어지는 감독과 감리사 직분을 제외한 모든 평신도와 목회자는 다양한 직분을 수행할 수 있다.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일반적으로 세우기 위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일을 말한다. 직분에는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 다스리는 자,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돕는 자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엡 4:11-13; 고전 12:28). 직분에는 사도, 선지자, 선교사, 전도자, 목사, 교사, 관리자, 기적의 사역자, 치유자, 및 도우미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엡 4:11-13; 고전 12:28). 직분에는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목회자, 교사, 선교사, 관리자, 기적의 사역자, 치유자, 도우미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Eph. 4:11-13; 1 Cor. 12:28). 성령은 사역에

대한 부르심과 그에 따른 교회의 분별과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통해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십니다.

일괄동의안 MIN-2B — 반대된 청원

청원 1070 259쪽 교육 요건에 관한 명확화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55 / 반대 0 / 기권 0

청원 1084 282쪽 목회자 훈련 기금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50 / 반대 0 / 기권 0

청원 1085 262쪽 교육 경로에 관한 명확화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55 / 반대 0 / 기권 0

청원 1135 234쪽 목회자 성품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60 / 반대 0 / 기권 1

청원 1148 268쪽 장로목사의 재정 및 행정 훈련 요건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55 / 반대 0 / 기권 0

청원 1294 271쪽 학위에 관한 불필요한 정보 삭제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55 / 반대 0 / 기권 0

청원 1346 272쪽 교육 경로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55 / 반대 0 / 기권 0

청원 1375 284쪽 목회자 훈련 기금 수정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44 / 반대 0 / 기권 2

청원 1431 273쪽 신학적 일치를 촉진하기 위한 계속 교육 요건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55 / 반대 0 / 기권 0

개별 심의 — 일괄동의안에 포함되지 않음

청원 1131 263쪽 안수를 위한 교육 요건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57 / 반대 1 / 기권 1

개정:

변경된 조항:

¶ 507. 안수를 위한 교육 요건 1. 교육 목표. 지식과 경건을 겸비하라는 존 웨슬리의 권고에 따라 글로벌감리교회에서 집사목사 또는 장로목사로 안수 받으려는 후보자는 준비 과정의 일부로 기본 교육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글로벌교회로서, 구체적인 요건들은 세계의 다양한 지역마다 서로 다를 수 있으나(¶ 507.2), 모든 요건은 전 세계의 목회자들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된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로 드리도록 힘쓰라”(디모데후서 2:15) 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준비될 수 있도록 학업에 전념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글로벌교회로서 구체적 요건은 세계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달라질 수 있으나(¶ 507.2), 모든 요건은 어디에서나 우리의 목회자가 ¶ 505의 요건을 충족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공부하였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2 Tim. 2:15).

2. 안수를 받는 길. 교육 프로그램과 기회는 지역과 생활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글로벌감리교회 안에서 안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가능한 최고 수준의 학습과 준비를 추구해야 한다. 북미 환경에서 장로목사가 평생의 사역을 준비하도록 디자인된 역사적 학위는 일반적으로 목회학 석사(MDiv)이지만, 성서학 석사(MA), 사역학 석사(MMin), 신학 석사(MTh)와 같은 학위를 통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으며, 미국과 유럽 외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의 경우 성서학을 포함한 사역 실천 분야의 학사 학위(BA)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 연령, 혹은 생활 여건으로 인해 이러한 정규 학위 과정 이수가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개인의 경우, 중등학교 졸업 자격을 갖추었다면, 위원단이 승인한 교육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비학위 ‘목회학 수료증’ 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며, 최소한 아래에 명시된 핵심 과목들을 완료해야 합니다.a. 글로벌 감리교회는 전 세계의 교육 제도에 부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기 위해 안수를 받고자 하는 이들이 가능한 최고 수준의 학문적 배움과 준비를 추구할 것을 기합니다. **안수받은 사역을 준비하는 후보자는 목회자 자격을 위한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중등 교육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이미 갖추어야 합니다.**

b. 연회 안수위원회로부터 인증을 받은 후(¶ 506.3), 사역 후보자는 자신이 계획한 교육 이수 계획을 안수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공유합니다. 사역 위원회는 매년 후보자와의 연대를 유지하여 교육 및 형성 과정의 진전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c. 안수받은 목회자 자격 인정을 위한 필요한 교육 요건을 충족하는 공인된 승인 교육 과정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학위 기반 교육 프로그램, (2) 교과 과정 자격증 프로그램, 또는 (3) ¶ 507.7.b에 규정된 글로벌 감리교 사역학교 교육 프로그램.

d. ¶ 507.2.c의 모든 프로그램. (학위 과정, 교과 과정, 및 사역학교)는 집사목사를 위한 ¶ 507.3과 장로목사를 위한 ¶ 507.4에 규정된 바와 같이 안수를 향한 규정 과목들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수 후보자 훈련을 위하여 승인된 모든 프로그램은 ¶ 810에 따라, 승인위원회의 권고에 근거하여 목회 및 고등교육위원단이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목회자 교육을 위해 승인된 학교 또는 프로그램 목록은 목회 및 고등교육위원단에서 관리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안수 후보자들은 승인된 기관 또는 프로그램 목록에서 안수를 위한 교육 요건을 이수하기 위해 선택해야 한다. 목회자 교육을 위해 승인된 학교 및 프로그램 목록은 목회 및 고등 교육위원단에서 관리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안수를 위한 교육 과정을 시작하는 학생은 상장된 승인 기관이나 프로그램의 목록에서 선택하여 교육 요구 사항을 이수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전에 학업을 마쳤거나 등록한 학생은 승인된 학교에서 학업을 마칠 필요가 없습니다.

글로벌 감리교회는 안수 자격 수준별로 요구 과목만 이수하면 위에 나열된 학위나 자격 프로그램의 단독 혹은 복합 과정 이수를 모두 인정합니다.

글로벌 감리교회에 가입하기 이전에 신학 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과정을 이수하였거나 현재 이수 중인 학생의 경우, 그 성적표는 안수위원회의 동등성 감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신학 및 교단 정치체제의 일치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3. 집사 목사의 교육 요건. 집사목사로 안수받은 사람들은 총 10 과목(약 삼십 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집사목사로 안수받는 이들에게는 총 10과목이 요구됩니다. 이 10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약 성경 개론
- 신약 성경 개론
- 조직신학
- 웨슬리안 신학과 교리
- 글로벌 감리교회의 감리교 역사와 정치체제
- 설교의 기초
 - 목회 상담
 - 전도와 선교
 - 성례와 예배에 대한 웨슬리안의 이해
- 귀납적 성경 연구 또는 해석학

4. 장로목사 교육 요건.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이전에 집사목사로 안수받은 개인은, 다음과 같이 필수 과목 여덟 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열 개의 추가 과목을 이수한 후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장로목사로 안수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이전에 집사목사로 안수받은 개인은, 아래에 열거된 필수 과목 여덟 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열 개의 추가 과목을 이수한 후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장로목사로 안수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이전에 집사목사로 안수받은 개인은, 아래에 열거된 필수 과목 아홉 과목을 포함하여 최소 열 개의 추가 과목을 이수한 후 글로벌 감리교회에서 장로목사로 안수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목들은 승인된 학교 및 프로그램에 의해 통합하거나 분산하여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종교개혁까지의 기독교 역사
- 기독교 역사: 종교개혁부터 현재까지
- 변증학
- 웨슬리안 제자도와 영성 훈련
- 크리스천 리더십과 갈등 해결
- 추가 구약 성경 과목
- 추가 신약 성경 과목
- 성령 사역

교회 재정 및 관리

잔여 선택 과목들은 다음 영역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교회의 사명과 교회 갱신

- 다문화 사역과 전도
- 고급 설교 • 히브리어 또는 그리스어 언어 연구
 - 목회 상담
 - **교회 재정 및 관리**
 - 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환경에서의 임상 목회 교육(CPE)
 - 종교철학
 - 이스라엘 현장 학습
- 신학 선택 과목
 - 예배 신학
 - 어린이 또는 청소년 사역
 - 정의를 위한 복음의 비전
 - 미디어 및 현대적 응용
- 지도형 인턴십 또는 독립 연구

드문 예외의 경우, 후보자는 해당되는 삶의 경험 또는 교육에 근거하여 이 요건들에 대한 동등성을 부여하기 위한 재량권을 행사해 줄 것을 사역 위원회에 청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는 전체 교육 요구 사항의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회 사역위원회는 사역을 위한 회의 인증 후보자에 대하여, 507항에 정의된 집사목사 또는 장로목사의 교육 요건에 대한 예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예외는 사역 위원회가 연회 목회자 회의에 4분의 3 다수로 권고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5. 글로벌 교육위원회. 사역 및 고등교육위원단의 일부로서 글로벌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며, 이 위원회는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웨슬리안 신학 교육을 장려하고 연결하며, 글로벌 메소디스트 교회의 선교적·신학적 목적에 부합하는 목회자 훈련의 일관된 기준을 보장합니다.”

5. 평가. In 서면 요건과 사역 위원회의 면접에 더하여, 집사목사 및 장로목사 안수 후보자는 사역 및 고등 교육 위원단이 개발한 서면 또는 구술 시험을 통하여 자신의 역량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시험은 목회 및 고등교육위원단이 마련한 평가 기준표를 사용하여 연회 안수위원회가 평가합니다.

6. 목회자를 위한 평생교육. 집사목사나 장로목사로 안수받은 후, 목회자는 가능한 한 적어도 매년 수업, 수련회, 세미나, 연구 휴가 등을 통해 평생 학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평생 교육 시간은 휴가나 개인 시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7. 목회학 프로그램 수업 인증 및 비학위 증명서. 목회 및 고등교육위원단은 특정 교육기관의 강좌가 이 단락에 나열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각 연회 안수위원회는 개인이 수강한 과목이 이러한 영역에 충분히 부합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목회 및 고등교육위원단은 사역 훈련을 위한 역량과 과정을 권고하고, 연회 안수위원회와 협력하여 승인된 비학위 목회학 수료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감독합니다. a. 사역 및 고등교육위원단은 승인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특정 기관의 과목들이 본 단락에 열거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목회 및 고등교육위원단은 사역 훈련을 위한 역량과 과정을 권고하고, 연회 안수위원회와 협력하여 승인된 학위 및 비학위 목회학 수료 프로그램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감독합니다.” 이 기준은 매년 글로벌 감리교회 웹사이트에 게시됩니다.

b. 글로벌 감리교회는 승인된 신학 교육 기관과의 거리, 언어 장벽, 기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신학 교육을 완료할 수 없는 예외적 상황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예외적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교육 자격 심사를 추구하는 이들은 사역 및 고등교육위원단이 승인한 글로벌 감리교 사역학교에서 교육 요건의 이수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8. 요구사항의 변화. 글로벌 감리교회 내에서 교육 요건이 변경되는 경우, 과정 중인 후보자는 후보자가 자신의 교육 완료를 향한 충분한 진전을 입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학업을 시작한 때에 효력이 있던 교리와 장정(과도기적 교리와 장정을 포함함)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자신의 교육 프로그램을 완료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합니다. 글로벌 감리교회 내에서 교육 요건 및/또는 기관 승인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과정 중인 후보자는 후보자가 자신의 교육 완료를 향한 충분한 진전을 입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자신이 프로그램을 시작한 기관에서 자신의 교육 프로그램을 완료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하며, 단 해당 기관은 후보자의 입학 당시 효력이 있던 교리와 장정(과도기적 교리와 장정을 포함함)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정식 또는 잠정 지위를 부여받은 기관이어야 합니다.

9. 과목 검토. 사역 및 고등교육위원단은 승인위원회 자문위원회와 각 사역위원회 대표들과 협의하여 안수를 위해 요구되는 과목들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그 권고안을 2026년 총회에 제출한다.” 목회 및 고등교육위원단은 승인위원회, 자문위원회 그리고 안수위원회 대표들과 협의하여, 안수를 위해 요구되는 과목들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고 그 권고안을 총회에 제출합니다.

청원 1442 274쪽 목회자에 대한 교리적 기대 명확화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5 / 반대 32 / 기권 8

청원 1450 293쪽 평신도 및 목회자 선교사 파송을 위한 자격과 과정 명확화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59 / 반대 0 / 기권 0

개정:

변경된 조항:

본 청원은 ¶ 515을 수정합니다

¶ 515 선교사의 사역. 교회 역사에 걸쳐, 개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의 파송을 받아 여러 문화를 넘어 예수의 복음을 나누고, 먼 곳에서 제자를 삼으며, 신생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장하고 신앙을 나누며 자비의 행위를 하도록 준비시켜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써, 이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부름받은 소명 선교사들입니다.

평신도 및 목회자 선교사의 자격과 파송. 글로벌 감리 교회는 평신도 선교사와 목회자 선교사 모두를 인정하고 축하한다. 글로벌 감리교회 선교사 직의 파송은 연회 선교 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선교사는 연회 회기에서 파송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글로벌 감리교회 선교사로 섬기고자 하는 후보자는 다음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탄화권 소명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밝힐 것;

그리스도께로의 회심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할 수 있을 것;

하나님께서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는 믿음으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으며, 제자를 낳는 제자를 만들도록 은사를 주셨음을 나타내는 열매를 맺을 것;

글로벌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을 받아들이고 확언하며, 총칙에 부합하는 영성 훈련과 성결의 모범을 실천하는 데 헌신하고, 최소 1년 이상 글로벌 감리교회 회중의 온전한 자격을 갖춘 교인일 것;

다음에 대한 훈련을 받았을 것:

(1) 다문화 선교(예: Perspectives 또는 연회 선교 위원회나 이에 상응하는 기구가 승인한 이에 준하는 훈련);

(2) 전도, 제자 삼기 및 제자 삼기 운동;

(3) 평신도 후보자는 인증 평신도 사역 요구 사항(¶ 409) 또는 최소 60시간의 회의 승인 동등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회 평의회를 통해 소속 개체 교회의 추천을 받고, 또한 연회 선교 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의 추천을 받을 것;

사역 현장에 있는 동안 개인 및 가족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목회적/교인 돌봄 및 지원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것;

글로벌 감리교회 연대 협의회 또는 그 지명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된 글로벌 감리교회 사역 또는 승인된 글로벌 감리교회 선교 파트너와 함께, 그리고 그 감독 하에 사역함;

매년 구역회에 사역 보고서를 제출할 것;

집사목사와 장로목사의 선교사 파송. 집사목사 또는 장로목사로서의 기준을 충족하는 선교사는 ¶ 610.10의 요구 사항에 따라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습니다.

¶ 515 선교사의 사역.

교회 역사에 걸쳐, 개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의 파송을 받아 여러 문화를 넘어 예수의 복음을 나누고, 먼 곳에서 제자를 삼으며, 신생 기독교 공동체가 예수의 이름으로 성장하고 신앙을 나누며 자비의 행위를 하도록 준비시켜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써, 이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부름받은 소명 선교사들입니다.

1. 평신도 및 목회자 선교사의 자격과 파송

글로벌 감리 교회는 평신도 선교사와 목회자 선교사 모두를 인정하고 축하한다. 글로벌 감리교회 선교사 직의 파송은 연회 선교 위원회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의 승인을 받습니다.

선교사는 연회 회기에서 파송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2. 평신도 및 목회자 선교사 파송 절차

A. 선교사로 파송을 구하는 사람은 절차를 시작하기 전 적어도 1년 동안 글로벌 감리교회의 회원이어야 합니다. 그들은 총칙에 부합하는 영적 규율의 실천과 성결의 양식에 대한 헌신을 가지고 글로벌 감리교회의 교리와 장정을 수용하고 확언하여야 합니다.

B. 선교사로서 사역에 대한 부르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다음 요구 사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1. 다음 질문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면접을 위해 직원/교구 관계 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원회를 만날 것:

a) 그리스도께로의 회심;

b) 다문화 직업적 사역으로의 부르심;

c)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합니까?

d) 그들의 삶은 어디에서 열매를 맺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믿음으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도록 은사를 주셨음을 보여 주니까?

e) 그들은 사역 현장에서 개인 및 가족의 안녕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목회자/회원 돌봄과 지원을 어떻게 받겠습니까?

2. 지역 교회의 보증을 받아 회의 선교 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원회에 추천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은 다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A. 직원/교구 관계 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원회가 교회/구역회에 대하여 비밀 투표 3분의 2로 추천할 것.

B. 그 또는 그녀의 지역 교회/구역회가 다수결 투표로 보증할 것

C. 그리고 연회 선교 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구의 승인을 받을 것.

3. 파송된 선교사를 위한 필수 훈련

A. 파송된 선교사는 다음에 대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1) 다문화 선교(예: Perspectives 또는 연회 선교 위원회나 이에 상응하는 기구가 승인한 이에 준하는 훈련);

2) 전도, 제자 삼기 및 제자 삼기 운동;

3) 평신도 후보자는 인증 평신도 사역 요구 사항(¶ 409) (¶ 502) 또는 최소 60시간의 회의 승인 동등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4. 파송된 선교사로서의 지속

A. 그들이 글로벌 감리교회 연대 협의회 또는 그 지정인이 결정한 승인된 글로벌 감리교회 사역 또는 승인된 글로벌 감리교회 선교 파트너와 함께, 그리고 그 감독 하에서 섬길 것임을 연회 선교 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원회에 증거로 제출할 것.

B. 연회 선교 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원회에 연례 사역 보고서를 제출할 것.

C. 파송된 선교사는 연회 선교 위원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원회에 의해 매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집사목사와 장로목사의 선교사 파송.

A. 집사목사 또는 장로목사로서의 기준을 충족하는 선교사는 ¶ 610.10의 요구 사항에 따라 선교사로 파송될 수 있습니다.

연회 | 완료된 청원

일괄동의안 CONF-2A — 지지된 청원

청원 1002 393쪽 연회가 소속 목회자들의 전반적인 안녕을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34 / 반대 0 / 기권 1

개정:

변경된 조항:

9. 목회자의 전반적 복지(죽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할 것 건강 및 생명 보험, 연금 목사관 및 기타 사역 주택)을 원하는 경우(¶ 443.4e 445.8m). 9. 목회자의 전반적 복지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할 것.

청원 1036 381쪽 제목 참조 업데이트

원안으로 지지: 찬성 39 / 반대 0 / 기권 0

청원 1037 384쪽 본처 전도사 투표의 일관성

원안으로 지지: 찬성 33 / 반대 0 / 기권 0

청원 1055 408쪽 ¶ 710 연회 이사회 및 위원회 수정 청원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34 / 반대 0 / 기권 0

개정:

변경된 조항:

9. 목회자와 평신도의 수 또는 거리 및 기술 부족으로 인해 위에 언급된 연회 위원회들의 정기적인 행정이 불가능한 연회에서는, 그 감독의 지지를 받아 대체 연회 구조의 승인을 위한 계획을 연회 위원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연회는 710.1-8항에 따라 구조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목회자와 평신도의 수 또는 거리, 기술 부족,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위에 언급된 연회 위원회들의 정기적인 행정이 불가능한 연회에서는, 감독의 지지를 받아 대체 연회 구조의 승인을 위한 계획을 연회 위원단에 제출할 수 있으며, 연례 검토를 조건으로 합니다.

청원 1136 386쪽 연회가 회의 평신도 지도자를 선출함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31 / 반대 2 / 기권 0

개정:

변경된 조항:

708.9. 연회는 서기, 평신도 대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임원 및 연회가 결정하는 기타 임원을 선출합니다. 708.9. 연회는 회의 비서, 회의 평신도 지도자 및 연회가 결정하는 기타 임원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청원 1191 406쪽 조사 위원회에 관한 문구 명확화

원안으로 지지: 찬성 31 / 반대 0 / 기권 0

청원 1192 407쪽 행정 심사 위원회에 관한 문구 명확화

원안으로 지지: 찬성 32 / 반대 0 / 기권 0

청원 1225 373쪽 총회의 권력과 권한 명확화

원안으로 지지: 찬성 37 / 반대 1 / 기권 0

청원 1226 375쪽 총회의 권한 명확화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38 / 반대 0 / 기권 0

개정:

변경된 조항:

11. 총회에 대한 대표 비율을 확정하십시오. 11. 711.2항에 따라, 총회에 대한 대표 비율을 확정합니다.

청원 1227 376쪽 총회의 입법 권한 명확화

원안으로 지지: 찬성 30 / 반대 0 / 기권 0

청원 1314 378쪽 하이브리드 총회의 유연성 허용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38 / 반대 0 / 기권 0

개정:

변경된 조항:

가상 회의. 대의원들의 물리적 집회를 방해하는 국제적 또는 지역적 조건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 감독회의 승인하에 글로벌 감리교회 연대 협의회는 2/3 투표로 전자 또는 기타 디지털 수단을 통한 회의 진행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208). **필요하고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경우, 특정 연회의 대표단은 연회 전체 대표단을 포함하여 총회에 대하여 교회 감독들과 연대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상으로 모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며 합리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경우, 특정 연회에서 총회에 파송된 대표단은 감독회 및 연대 협의회의 2/3 투표 승인을 받아, 전체 델리게이트 전원을 포함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가상으로 회합할 수 있습니다.**

일괄동의안 CONF-2B — 반대된 청원

청원 1027 388쪽 필수 선출 순서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0 / 반대 34 / 기권 0

청원 1100 374쪽 연대 협의회를 정의하고 설치할 총회의 권한 명확화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38 / 반대 0 / 기권 0

청원 1113 402쪽 연회 공천 및 지도력 위원회의 선출 과정과 운영 지침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1 / 반대 33 / 기권 0

청원 1132 395쪽 연회 기도 네트워크 위원회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2 / 반대 32 / 기권 3

청원 1189 391쪽 총회에 대한 연회 대표단 정의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0 / 반대 31 / 기권 0

청원 1193 409쪽 연대 기금을 대의원 산정 공식과 분리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0 / 반대 35 / 기권 0

청원 1224 372쪽 총회의 권력과 권한 명확화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39 / 반대 0 / 기권 0

청원 1244 414쪽 기존 청소년 구조의 보호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0 / 반대 34 / 기권 0

청원 1259 382쪽 새 ¶ 708. 총회의 재정 사항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0 / 반대 32 / 기권 0

청원 1287 392쪽 신설 교회로부터의 대의원 허용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0 / 반대 29 / 기권 1

청원 1312 367쪽 추가 구역회 허용을 명시함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2 / 반대 33 / 기권 2

청원 1463 368쪽 공개 회의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0 / 반대 39 / 기권 0

청원 1464 370쪽 연회 웹사이트를 위한 최소 기준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0 / 반대 39 / 기권 0

개별 심의 — 일괄동의안에 포함되지 않음

청원 1069 394쪽 연회 기도 네트워크 위원회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4 / 반대 30 / 기권 3

청원 1186 379쪽 청원 및 결의안 제출 절차 명확화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35 / 반대 0 / 기권 0

개정:

변경된 조항:

~~¶ 706. 총회에 청원 및 해상도 제출. 어떠한 공식 조직, 목회자, 또는 글로벌 감리교회의 평신도 회원도 청원을 또는 결의안을 조직과 연약 계획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총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식 조직, 목회자 회원 또는 글로벌 감리교회의 고백 교인은 누구나 조직과 연약 계획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총회에 청원 또는 결의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절차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4. 개인이 제출하는 청원 또는 해상도에는 해당 개인 및 모든 10명의 공동 서명자에 대한 유효한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인이 제출하는 청원 또는 결의안은 해당 개인과, 추가로 열 명의 다른 고백 교인 또는 목회자 공동서명자 모두에 대한 유효한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공식 글로벌 감리교회 조직을 대표하여 제출되는 청원 및 해상도에는 해당 조직을 대표하여 제출하는 자의 유효한 연락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회의록 또는 기타 증빙 문서(총회 비서 또는 그 지정인이 승인한 경우)는 청원 또는 해상도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5. 글로벌 감리교회 소속 구성원이 청원 또는 해상도 제출에 필요한 기술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해당 구성원이 속한 연회의 사무실이 구성원과 협력하여 제출 과정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5. 글로벌 감리교회 회원이 청원 또는 결의안을 제출하는 데 필요한 기술에 대한 접근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 회원이 거주하는 연회의 사무국이 해당 회원과 협력하여 제출 절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4. 청원 및 결의안은 총회 개회 회기 120일 전까지 총회 총무 또는 그 지정인에게 접수되어야 합니다. 6. 청원 및 결의안은 총회 개회 회기 120일 전까지 총회 총무 또는 그 지정인에게 접수되어야 합니다.~~

~~5. 적절하게 제출된 청원은 총회 전에 교회의 모든 주요 언어로 배포되어 총회 개회 최소 60일 전에 대의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적절하게 제출된 청원 및 해상도는 총회 전에 교회의 모든 공용어로 배포되며, 총회 개회 최소 60일 전에 대의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7. 적절하게 제출된 청원 및 해상도는 총회 전에 교회의 모든 공용어로 배포되며, 총회 개회 최소 60일 전에 대의원들에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청원 또는 결의안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청원 또는 결의안은 첫 번째 저자의 이름을 밝히고 추가로 접수된 사본의 수를 표시하여 한 번만 게재됩니다. 출판 후, 사전 출판물의~~

모든 번역본은 교단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파일로 제공된다. 마감일 이후에 접수된 청원 및/또는 결의안은 총회의 배포 승인을 받아 모든 대의원에게 인쇄 및/또는 배포할 수 있다. 기한 후에 접수된 청원 및/또는 결의안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대의원의 3분의 2 투표로 총회에서 심의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에 접수된 청원 및/또는 결의안은 총회에서 심의되지 않습니다.

6. 총회 총무 또는 지정인은 총회 회기 전반에 걸쳐, 총회 조치 및 그로 인한 교리와 장정에 대한 영향을 포함한 모든 청원에 전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하여야 합니다. 8. 총회 총무 또는 지정인은 총회 회기 전반에 걸쳐, 총회 조치 및 그로 인한 교리와 장정에 대한 영향을 포함한 모든 청원에 전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 접근은 최소한 교리와 장정 새 판이 출판될 때까지 이용 가능하여야 합니다. 시행은 글로벌 감리교회 연대 협의회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청원 1187 385쪽 연회의 평신도 멤버십 명확화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33 / 반대 0 / 기권 0

개정:

변경된 조항:

1. 연회는 목회자와 평신도를 연결하여 지역 전체에서 공동의 사역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됩니다. 지리적으로 구속되지 않고 다른 연회 또는 지방회의 경계와 겹치는 특별 연회 또는 지방회는 교회들의 요청에 따라 총회의 결정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연회의 투표 멤버십은 ¶ 520의 자격을 충족하는 장로목사, 집사목사, 파송 중인 과도기적 본처 목사들(다른 곳에서 교리와 장정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함) 및 선임 목회자, 그리고 각 담당 또는 지방 또는 연회에서 선출된, 적어도 동수의 평신도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연회의 투표 멤버십은 ¶ 520의 자격을 충족하는 장로목사, 집사목사, 본처 전도사, 파송 중인 과도기적 본처 목사들(다른 곳에서 교리와 장정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함) 및 선임 목회자, 그리고 각 담당 또는 지방 또는 연회에서 선출된 적어도 동수의 평신도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각 구역회에는 파송된 목회자 수만큼의 평신도 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연회는 연회 지도력 직분에서 봉사하는 연회의 평신도 회원 및 연회가 선택하는 다른 평신도 회원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연회는 목회자 수와 똑같은 숫자를 맞추기 위해 평신도 회원을 추가로 선출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동등한 평신도 선거에서는 평신도만 투표할 수 있다. 동수의 평신도 선거에서는 평신도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연회는 추가 평신도 회원 수와 선거 방법을 결정합니다. 그러한 회원은 구역회, 지방회, 연회의 평신도 회기, 또는 연회에 의해 선출될 수 있으나, 임명이 아니라 선출이어야 합니다.

청원 1202 396쪽 연회 내 평신도 이사회 설치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10 / 반대 28 / 기권 0

청원 1265 405쪽 연회 이사회 및 위원회 ¶ 710:5c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30 / 반대 5 / 기권 0

개정:

변경된 조항:

총리사는 위원회의 의장을 맡는다.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부의장, 비서 및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임원을 선출합니다.

총리사는 위원회의 당연직 회원이 됩니다.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임원을 선출합니다.

총리사는 위원회의 의장으로서 발언권은 있으나 투표권은 없으며, 가부 동수인 경우 결정 투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임원을 선출합니다.

헌법, 연대 조직, 재정 | 완료된 청원

일괄동의안 CCOF-2A — 지지된 청원

청원 1054 544쪽 연대 운영 사무국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46 / 반대 0 / 기권 0

개정:

변경된 조항:

¶ 815. 연대 운영 책임자. 연대 운영 책임자는 모든 총회 이사회, 위원회 및 협의회가 총회의 선교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함께 일하면서 총회의 모든 위원회와 협의회가 열매를 맺고 책임감 있게 기능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연대운영책임자는 연대협의회와 총회 산하의 모든 위원단, 위원회, 협의회가 글로벌감리교회의 사명과 총회에서 채택된 모든 선교적 명령을 이루기 위해 함께 일할 때, 그것들이 열매 맺게 그리고 책임 있게 기능하도록 책임을 집니다. 연대 운영 책임자는 연대 협의회와 모든 총회 교회 위원단, 위원회 및 협의회가 글로벌 감리교회의 사명과 총회에서 통과된 선교적

위임 사항을 성취하기 위하여 함께 일할 때, 그들이 열매 맺고 책임 있게 기능하도록 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직위 해임. 연대 운영 담당자는 글로벌 감리교회의 '임의로' 고용된 직원입니다. 따라서 연대 운영책임자는 글로벌 감리교회가 설립된 주의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떤 이유로든 경고 없이 연대 협의회의 다수결 투표로 해임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원칙과 윤리 기준에 따라, 연대 협의회는 연대 운영책임자 해임에 나서기 전에 업무 성과에 결함이 있을 경우 먼저 이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협의회는 금전적 보상과 비방 금지조항이 포함된 퇴직 계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책임자는 글로벌 감리교회가 설립된 주의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떤 이유로든 연대 협의회의 다수결 투표로 해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해임이 글로벌 감리교회가 법인으로 설립된 지역에서 적용되는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 한, 그 책임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연대 협의회의 다수결 투표로 해임될 수 있습니다.

a. 연대 협의회, 신규 연대 위원단들, 태스크 포스가 총회 사이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선교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책임감 있게 기능하도록 보장하는 최고 운영책임자로 봉사합니다. 글로벌 감리교회의 사명과 총회의 선교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연대 협의회, 연대 위원단, 위원회 및 협의회의 책임 있는 운영을 담당하는 최고 운영 책임자로 섬깁니다. 글로벌 감리교회의 사명과 총회의 선교적 위임 사항을 성취하기 위하여 일하는 연대 협의회, 연대 위원단, 위원회 및 협의회의 책임 있는 기능에 대한 책임을 지는 최고 운영 책임자로 봉사할 것.

j.i. 재정, 행정, 연금, 복지제도 위원단과 재정 책임 담당자와 협의하여 심의, 개정, 승인 대상인 총회 예산을 준비합니다. 재정, 행정 및 복지제도 위원단 및 재정 총괄이사와 협의하여, 심의·개정·승인을 위한 총회 예산을 준비할 것.

청원 1065 457쪽 지역 교회의 연대 기금 송금 선택지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41 / 반대 0 / 기권 0

개정:

변경된 조항:

7.매월 지역 교회는 총교회 연대 기금의 연간 총액의 1/12을 글로벌 감리교회 재무에게 송금하고, 연회 연대 기금의 연간 총액의 1/12을 해당 연회에 송금하여야 합니다. 개체 교회는 정기적으로, 최소 연 1회 이상, 총회 연대기금을 총회 또는 해당 연회에 송금하여 이를 총회로 전달해야 합니다. 지역 교회는 해당 연회의 지시에 따라, 적어도 매년 1회 이상, 총교회 연대 기금을 총교회에 또는 총교회로 전달하기 위하여 해당 연회에 정기적으로 송금하여야 합니다. 연회는 송금된 기금의 수령 교회와 해당 기간에 대한 상세한 목록을 총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개체 교회는 정기적으로, 최소 연 1회 이상, 연회 연대기금을 해당 연회에 송금해야 합니다.

청원 1086 420쪽 문법 수정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40 / 반대 4 / 기권 0

개정:

변경된 조항:

¶ 204. 제3조. 모두를 위한 교회—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며 그분의 사랑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은 잉태된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며 그분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사역에 참여하며, 회개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거룩한 삶을 향한 진실한 열망을 보임으로써, 연대 안의 어느 지역 교회에서든 회원이 되도록 환영받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역에 참여하며, 죄를 회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진실한 열망을 보이는 것을 통해, 연대 내의 모든 개체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청원 1092 441쪽 감독회 정의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44 / 반대 0 / 기권 0

개정:

변경된 조항:

제 8조. 감독권 — 글로벌 감리교회의 총감리직은 감독들에게 맡겨지며, 이들은 교회에 영적 지도력을 제공하고 총회에서 채택한 대로 현세적 권위를 행사합니다. 감독은 총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며, 총회의 뜻에 따라 교회의 믿음, 질서, 일치, 전례, 교리 및 규율을 수호하기 위하여 봉사하여야 합니다. 모든 현직 감독은 감독회 회원이 됩니다. 감독회는 모든 현직 감독으로 제한됩니다.

청원 1101 474쪽 연대 위원단 명칭 명확화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41 / 반대 2 / 기권 0

개정:

변경된 조항:

3. 글로벌 감리교회 내에는 다음의 연대 위원단들이 설치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위원단; 제자도, 교리 및 정의 사역 위원단; 사역 및 고등교육위원단; 재정, 행정 및 복지제도 위원단; 총회 위원단,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단; 그리고 연회 위원단.

글로벌 감리교회 내에는 다음의 연대 위원단들이 설치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위원단; 제자도, 교리 및 윤리 위원단; 사역 및 고등교육위원단; 재정, 행정 및 복지제도 위원단; 총회 위원단, 에큐메니컬 관계 위원단; 그리고 연회 위원단.

청원 1102 477쪽 중복 문구 삭제

원안으로 지지: 찬성 46 / 반대 0 / 기권 0

청원 1108 526쪽 재정, 행정, 연금 및 복지제도 위원단의 역할 명확화

원안으로 지지: 찬성 46 / 반대 0 / 기권 0

청원 1109 530쪽 총회 위원단의 역할 명확화

원안으로 지지: 찬성 46 / 반대 0 / 기권 0

청원 1118 541쪽 연회 위원단의 역할 명확화

원안으로 지지: 찬성 46 / 반대 0 / 기권 0

청원 1195 553쪽 지역 법 준수 명확화

원안으로 지지: 찬성 49 / 반대 1 / 기권 0

청원 1196 554쪽 이사회 단락 번호 재지정

원안으로 지지: 찬성 49 / 반대 1 / 기권 0

청원 1215 450쪽 연대 기금의 웨슬리안 가치 명확화

원안으로 지지: 찬성 49 / 반대 1 / 기권 0

청원 1217 455쪽 연대 기금의 산정, 송금 및 설명 절차 명확화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42 / 반대 0 / 기권 0

개정:

변경된 조항:

7. 매월 지역 교회는 총교회 연대 기금의 연간 총액의 1/12을 글로벌 감리교회 재무에게 송금하고, 연회 연대 기금의 연간 총액의 1/12을 해당 연회에 송금하여야 합니다. 지역 교회는 매월 총회 연대 기금 연간 총액의 최소 12분의 1과 연회 연대 기금 연간 총액의 최소 12분의 1을 각 연회에 송금하여야 합니다. 연회 재무는 매월 지역 교회들로부터 수납한 모든 총회 연대 기금을 글로벌 감리교회 재무에게 송금하여야 합니다.

지역 교회는 해당 연회의 지시에 따라, 적어도 매년 1회 이상, 총교회 연대 기금을 총교회에 또는 총교회로 전달하기 위하여 해당 연회에 정기적으로 송금하여야 합니다. 연회는 송금된 기금의 수령 교회와 해당 기간에 대한 상세한 목록을 총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개체 교회는 정기적으로, 최소 연 1회 이상, 연회 연대기금을 해당 연회에 송금해야 합니다.

청원 1218 458쪽 선교적 교회 지정 절차 명확화

원안으로 지지: 찬성 49 / 반대 1 / 기권 0

청원 1253 543쪽 글로벌 일치, 지역 유연성: ¶ 814.6 삭제

원안으로 지지: 찬성 46 / 반대 0 / 기권 0

청원 1277 454쪽 글로벌 일치, 지역 유연성: ¶ 449.3 삭제

원안으로 지지: 찬성 49 / 반대 1 / 기권 0

청원 1278 451쪽 글로벌 일치, 지역 유연성: ¶ 449.1 삭제

원안으로 지지: 찬성 49 / 반대 1 / 기권 0

청원 1437 516쪽 위원단 명칭을 제자도, 교리 및 윤리 위원단으로 변경

원안으로 지지: 찬성 46 / 반대 0 / 기권 0

일괄동의안 CCOF-2B — 반대된 청원

청원 1029 529쪽 총회 행정 위원회 후보자 제한 삭제 청원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46 / 반대 0 / 기권 0

청원 1038 472쪽 연대 위원단의 공개 회의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46 / 반대 0 / 기권 0

청원 1039 496쪽 연대 협의회 공개 회의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46 / 반대 0 / 기권 0

청원 1040 550쪽 투표 비율 간소화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46 / 반대 0 / 기권 0

청원 1072 481쪽 800번대 단락에서 구식 참조 삭제 청원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46 / 반대 0 / 기권 0

청원 1075 502쪽 800번대 단락에서 구식 참조 삭제 청원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46 / 반대 0 / 기권 0

청원 1103 487쪽 위원단 의장의 역할과 책임 명확화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45 / 반대 0 / 기권 0

청원 1119 542쪽 연회 위원단 역할에서 불필요한 문구 삭제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46 / 반대 0 / 기권 0

청원 1120 548쪽 연대 운영 책임자의 역할 명확화 및 불필요한 문구 삭제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46 / 반대 0 / 기권 0

청원 1123 491쪽 위원단 임원 선출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45 / 반대 0 / 기권 0

청원 1152 482쪽 연대 위원단 및 연대 협의회 공천의 일관성 (3개 중 1)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46 / 반대 0 / 기권 0

청원 1157 489쪽 연대 위원단의 지도력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45 / 반대 0 / 기권 0

청원 1239 421쪽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는 것을 핵심 헌법 가치로 삼기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41 / 반대 0 / 기권 0

청원 1251 551쪽 글로벌 일치, 지역 유연성: ¶ 815.6m 축소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46 / 반대 0 / 기권 0

청원 1252 549쪽 글로벌 일치, 지역 유연성: ¶ 815.1c 삭제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46 / 반대 0 / 기권 0

청원 1267 515쪽 글로벌 일치, 지역 유연성: ¶ 809 삭제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46 / 반대 0 / 기권 0

청원 1276 456쪽 글로벌 일치, 지역 유연성: ¶ 449.6에 형용사 추가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49 / 반대 1 / 기권 0

청원 1310 423쪽 구역회에 관한 개시 진술 명확화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47 / 반대 0 / 기권 0

청원 1313 419쪽 글로벌 일치, 지역 유연성: ¶ 201 삭제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47 / 반대 0 / 기권 0

청원 1329 528쪽 미국 외 지역 목회자 및 직원의 연금 및 복지제도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46 / 반대 0 / 기권 0

청원 1452 476쪽 위원단 명칭 변경: 하나님 나라 확장 위원단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46 / 반대 0 / 기권 0

청원 1465 460쪽 연회 설치 근거 제한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49 / 반대 1 / 기권 0

개별 심의 — 일괄동의안에 포함되지 않음

청원 1093 442쪽 연대상소협회의 상소에 관한 권한과 책임 명확화

원안으로 지지: 찬성 10 / 반대 2 / 기권 1

청원 1134 488쪽 위원단 임원 선출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44 / 반대 1 / 기권 0

개정:

변경된 조항:

¶ 804. 연대 위원회의 리더십. 1. 위원단 의장 — 각 연대 위원단의 사회자는 그 위원단의 의장이 됩니다. 의장은 평신도 또는 목회자일 수 있으며 ¶ 803.2b의 멤버십 요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2024년 창립 총회 소집 이후, 연대 협의회는 각 연대 위원단에 선출된 사람들 중에서 각 연대 위원단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총회 이전에 선출된 각 의장의 임기는 2년 또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이며, 2026년 총회 이후 재선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 통과 즉시 효력을 가지며 2026년 총회부터, 각 위원단은 그 회원들 중에서 임원(의장, 부의장, 서기)을 선출하여야 합니다. 각 연대 위원단의 의장은 ¶803.2c에 규정된 대로 선출됩니다. 2026년 총회 및 그 이후에 선출된 각 의장은 기간 6년을 맡으며, 한 번 재선되어 둘째 기간 6년을 더 연임할 자격이 있습니다. 연대위원단 위원으로 활동한 시간은 위원장의 총 임기 제한에 포함된다. 의장직의 공석은 관련 연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연대 협의회에서 채웁니다. 임원에 공석이 발생할 경우, 각 위원단은 그 회원 중에서 후임 임원을 선출합니다.**

청원 1316 424쪽 글로벌 일치, 지역 유연성: ¶ 206.1의 문구 삭제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35 / 반대 4 / 기권 0

사법 행정 | 완료된 청원

일괄동의안 JUD-2B — 반대된 청원

청원 1046 580쪽 교리와 장정의 917항을 수정하는 청원.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31 / 반대 0 / 기권 0

청원 1081 573쪽 공정한 과정에 보복 금지 및 회복적 소통을 포함하도록 확대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31 / 반대 0 / 기권 0

청원 1082 576쪽 평신도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 범죄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31 / 반대 0 / 기권 0

청원 1154 583쪽 연대상소협의회 공천의 일관성 (3개 중 2)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32 / 반대 0 / 기권 0

청원 1289 582쪽 연대상소협회의 더 많은 후보자 허용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32 / 반대 0 / 기권 0

청원 1311 579쪽 재판 계류 중 평신도 회원을 지도력 직분에서 정직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32 / 반대 0 / 기권 0

청원 1421 577쪽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에 대한 성적 비행의 사법적 고소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32 / 반대 0 / 기권 0

청원 1423 578쪽 평신도 회원의 기소 가능 범죄 수정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32 / 반대 0 / 기권 0

청원 1440 574쪽 다수의 고소인 또는 피고소인이 있는 고소의 행정 처리 절차

다음을 지지하여 반대됨: 찬성 29 / 반대 0 / 기권 0

청원 1453 575쪽 연회 행정 심사 위원회 회원 공천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32 / 반대 0 / 기권 0

개별 심의 — 일괄동의안에 포함되지 않음

청원 1284 568쪽 연대상소협회의회의 기피 및 이해 상충

원안으로 불승인: 찬성 27 / 반대 4 / 기권 0

청원 1414 581쪽 연대상소협회의에 선출될 목회자 및 평신도 수의 설정

수정안으로 지지: 찬성 31 / 반대 0 / 기권 0

개정:

변경된 조항:

¶ 920. 멤버십. 1. 연대상소협회는 글로벌 감리교회의 최고 사법기관입니다. 위원회는 7명의 회원으로 구성됩니다. 창립 총회에서 초기 협의회를 선출할 때, 4명의 위원은 목회자로 그리고 3명의 위원은 평신도로 구성한다. 2024년 창립 총회 소집에서 선출된 회원은 2026년 총회에서 피천 자격이 있으며, 이들의 2년 임기는 본 조항에 명시된 임기 제한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2026년 총회에서는 4명의 회원이 목회자이며 3명의 교인이 평신도로 구성됩니다.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위원은 최대 2회 연속하여 6년의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목회자와 평신도의 위원수는 6년마다 교대하여 목회자는 해당 임기 동안 4명, 평신도는 다음 6년 임기 동안 4명으로 한다. 위원은 글로벌감리교회의 정회원 목회자나 평신도로써 고백교인이어야 한다. 회원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고백교인(목회자 또는 평신도)이어야 합니다. 감독은 협의회에 선출될 자격이 없습니다. 연대상소협회는 글로벌 감리교회의 최고 사법기관입니다. 위원회는 7명의 회원으로 구성됩니다. 2024년 창립 총회 소집에서 선출된 회원은 2년 또는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2024년 창립 총회 소집에서 선출된 이는 2026년 총회에서 공천 자격이 있으며, 이 2년 기간은 여기 명시된 기간 제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6년 총회에서는 4명의 회원이 목회자이며 3명의 교인이 평신도로 구성됩니다. 회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합니다. 위원은 최대 2회 연속하여 6년의 임기를 수행할 수 있다. 목회자와 평신도의 위원수는 6년마다 교대하여 목회자는 해당 임기 동안 4명, 평신도는 다음 6년 임기 동안 4명으로 한다. 회원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고백교인(목회자 또는 평신도)이어야 합니다. 감독은 연대상소협회의에 선출될 자격이 없다. 이 청원의 문구는 2026 총회에서 가결되는 즉시 효력을 갖습니다.

표지 읽기

위원회 삽입 — 이전에 분산된 모든 자금은 보조금으로 간주한다

위원회 삭제 — 최초 위원회가 소집에 의해 선출될 때...

청원인이 삽입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 삭제 — 회원은 글로벌 감리교회의 고백 교인이어야 한다...

청원인 삽입 (v1.30) — ...총리사가 지명한...

청원인 삭제 (v1.30) — 위원회는 감독이 지명한다...



This page intentionally left blank.

Esta página está en blanco intencionalmente.

Cette page est intentionnellement laissée vierge.

Esta página foi intencionalmente deixada em branco.

Ukurasa huu umeachwa wazi kwa makusudi.

이 페이지는 의도적으로 비워 두었습니다.

ይህ ገጽ ሆኖ ተቀላቅሎ ባዶ ቀርቷል።

Эта страница намеренно оставлена пустой.

หน้านี้ปล่อยว่างโดยเจตนา
